

이동망 접속료제도 발전방향

- 목 차 -

1. 서언
2. 해외사례
3. 국내 이동망 접속료 제도
4. 원가기준 접속료제도 도입의 필요성
5. 맺음말

1999.5.

기술경제연구부 공정경쟁연구팀

선임연구원 변재호

이동망 접속료제도 발전방향

1. 서언

이동전화가입자수가 1700만을 돌파하고 보급률 또한 40%에 근접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동전화에 관한 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이동전화의 급격한 보급은 정부의 경쟁확대정책이 주효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경쟁확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동전화착신서비스는 여전히 경쟁원리가 작용하지 않고 있는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동망 착신서비스의 경우 전화를 거는 사람이 착신자가 가입한 이동망에 접속하여야만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신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동망 착신서비스의 경우 명백히 애로서비스(bottleneck service)¹⁾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이동망 착신서비스 분야가 애로서비스 성격을 갖게 됨에 따라 영국, 호주, EU 등 이동전화 선진국에서는 이동망 착신서비스의 요금과 접속료를 원가에 근거한 요금으로 전환하였거나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이동망원가검증을 실시하고 이동망 착신접속료를 원가에 근거한 요금으로 전환하는 이유를 영국의 Ovum 사는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첫째, 이동전화 이용자들 사이에 이동전화사업자들이 과도한 요금징수를 통해서 지나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이동전화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이동망이 고정망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그로 인해 고정망사업자와 이동망사업자간 경쟁의식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쟁의식은 상호합의에 의한 접속협정체결을 어렵게 하여 규제기관의 개입과 원가기준접속료 채택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이다. 셋째, 경제전반에 대한 이동전화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함으로써 이동전화사업자의 행동에 대한 규제기관의 관심이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동망 원가검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7년 상호접속고시기준 개정시 2000년부터 이동망에서도 원가검증을 실시하고 원가에 근거한 접속료를 설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동망 원가검증의 국제적 추세를 수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영국, 호주, EU의 이동망접속료제도와 국내 이동망접속료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이동망에 원가기준 접속료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영국 OFTEL은 발신자에게 선택권이 없음을 이유로 이동망 착신서비스를 애로서비스(bottleneck service)로 규정하고 있다.

2. 해외사례

최근 각국에서 이동전화요금율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동망 착신접속료를 원가계산방식으로 전환한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영국은 1999년 4월부터 원가계산방식 접속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호주도 규제기관인 ACCC가 원가계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U는 1997년 6월에 Interconnection Directive를 채택하고 시장지배력을 가진 이동전화사업자에 대해서 별도의 투명한 원가계산시스템을 유지하여 원가를 반영한 접속료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 호주 및 EU의 이동망 착신접속료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영국

영국 OFTEL은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매년 20%씩 성장하고 가입자수도 8백만을 상회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이동전화서비스의 중요성이 집중하게되자 1996년에 이동망 착신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에 착수하게된 주요 원인은 가입자들이 이동전화요금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불만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OFTEL은 1997년 12월에 이동망 착신접속료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동망 착신접속료 인하를 위해서 Cellnet과 Vodafone으로 하여금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 CWC에 부과하는 접속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접속료를 인하하도록 명령하였다²⁾. 그러나 Vodafone 및 Cellnet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1998년 1월에 CWC와 이동망 착신접속료를 BT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OFTEL의 권고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한편 이용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동망접속료의 경우 사업자간 합의방식이 우선하기 때문에 OFTEL은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OFTEL은 1998년 3월에 2년간에 걸친 이동망 착신접속료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이동망 착신접속료 수준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³⁾으로 1998/99 회계연도 적용 접속료인 14.83펜스 대신에 10.6펜스가 적정하다. 둘째, 이동망 착신서비스는 발신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서비스로 명백히 애로서비스(bottleneck service)이며 애로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가지향 요금이 설정되어

2) 1997/98 회계년도중에 Vodafone 및 Cellnet이 CWC에 부과하는 접속료는 분당 12.3펜스에 불과하였으나 BT 등 타사업자에 대해서는 16.2펜스를 부과하고 있었다.

3) 이동망 요금이 과다하다는 증거로 OFTEL은 이동망사업자들의 과도한 자본이익률(Return on Capital)을 들고 있다. 1996/97회계년도의 경우 Vodafone의 자본 이익률은 65.8%에 달하며, Cellnet의 자본이익률 31.5%에 달하고 있다.

야 한다. 셋째, 이러한 이동사업자의 접속료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OFTEL에 부여하기 위해 Cellnet과 Vodafone의 면허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OFTEL은 1998년 5월에 이처럼 과도한 접속료가 이용자의 이익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독점 및 합병위원회(MMC)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OFTEL의 의뢰에 따라 MMC는 독자적인 조사를 통해서 OFTEL의 조사결과가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이동망 착신접속료를 원가지향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답신을 1998년 12월 4일 OFTEL에 제출하였다. MMC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망 착신접속료는 원가지향 요금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원가지향 요금은 16.5%의 자본보수율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둘째, 원가지향 이동망 착신접속료는 “효율적인 상태에서 발생된 비용”만을 고려하여야 하며, 25%의 시장점유율 가진 가상의 사업자가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벤치마크(benchmark)로 한다. 벤치마크 요금은 1998/99 회계연도에는 분당 12.15펜스, 1999/2000 회계연도에는 11.38펜스, 2001/02 회계연도에는 9.98펜스이다. 셋째 이러한 벤치마크 요금과 Vodafone과 Cellnet이 적용하고 있는 현행요금(1998년도 8월)을 비교하여 보면 현행요금이 1998/99회계연도 벤치마크요금에 비해서 약 22%정도 높은 수준이며, 1999/2000 회계연도 벤치마크요금에 비해서는 30%정도 높은 수준 이어서 명백히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넷째, 이러한 이용자 이익 침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이동망 착신요금에 대해 요금규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MMC는 이상의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OFTEL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 ① 1999년 4월~2000년 3월의 1년간은 BT에게 청구하는 상호접속요금을 분당 평균 11.70펜스⁴⁾ 이하로 억제한다.
- ② 이후 2002년 3월까지의 상호접속요금에 매년 “RPI-9(%)”의 프라이스캡을 적용한다.

<표 1> MMC제안 이동망착신 접속료(Vodafone 및 Cellnet에만 적용)

적 용 기 간	상 호 접 속 요 금
1999년 4월~2000년 3월	11.70펜스/분 이하(평균)
2000년 4월~2001년 3월	“RPI-9(%)”의 프라이스캡 적용
2001년 4월~2002년 3월	“RPI-9(%)”의 프라이스캡 적용

4) Cellnet과 Vodafone은 그동안 이동전화착신통화중 음성안내서비스로의 착신통화 또는 호착신전환상태로 인해 발생한 불완료호 등 상대측과의 통화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서 MMC는 이를 금지하였다. MMC는 대신에 이러한 불완료호로 인해 발생하는 접속비용의 일정부분은 통화가 성립한 경우의 상호접속요금에 덧붙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9/2000회계연도에는 벤치마크요금 11.38펜스에 불완료호 비용으로 0.32펜스를 추가하여 벤치마크요금은 11.7펜스로 결정되었다.

한편 OFTEL은 MMC에 의한 조사결과를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3사의 면허개정에 나서겠다는 의향을 밝힌바 있다. 영국에서는 이미 BT민영화 당시(84년)부터 BT의 전화요금에 프라이스캡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동전화사업자에 대한 요금규제는 이번이 첫 사례가 된다. MMC의 권고에 따르면 1999년 4월부터 BT의 일반전화사용자가 Vodafone 또는 Cellnet의 이동전화에 거는 경우의 통화요금은 현행의 분당 30펜스부터 22펜스 전후까지 인하되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약 25%의 요금인하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OFTEL은 상위 2사인 Vodafone과 Cellnet의 접속료 인하로 경쟁원리가 작용하게 되면, 후발사업자⁵⁾인 오렌지와 One-2-One도 여기에 가세하게되어 이용자가 지불하는 이동전화요금 절감액이 향후 3년간 10억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 호주

호주의 이동전화사업자는 <표 2>과 같이 3개 사업자가 있는데 Telstra는 AMPS 및 GSM 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Optus는 Testra로부터 AMPS 서비스의 airtime을 도매하여 재판매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GSM 망을 운영하고 있다. Vodafone은 GSM망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11.3%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표 2> 호주의 이동망사업자 현황(1998.6 현재)

사업자	AMPS가입자	점유율	GSM가입자	점유율	Total	점유율
Telstra	1,400,000	71.1%	1,700,000	48.0%	3,100,000	56.2%
Optus	570,000	28.9%	1,220,000	34.6%	1,790,000	32.5%
Vodafone	-	-	620,000	17.5%	620,000	11.3%
Total	1,970,000	100%	3,540,000	100%	5,510,000	100%

호주에서 상호접속관련 규제업무는 ACCC(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가 담당하고 있는데 ACCC는 1998년 7월 1일 Austel로부터 상호접속관련 규제업무를 이관 받았다.

ACCC는 상호접속에 관한 한 가능한 한 상업적 합의 내지 산업내자율규제(industry self-regulation)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개입하고 있는데 ACCC가 개입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간 상호협의를 시도한다. 둘째, 사업자간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ACCC의 승인을 득한 접속제공사업자의 상호접속조건에 따라 접속협정을

5) Orange와 One-2-One은 Vodafone 및 Cellnet과 비교하여, 시장지배력이 열등하고, 상호접속요금이 낮기 때문에 당초부터 OFTEL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요금규제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체결한다. 셋째, 사업자간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접속제공사업자의 상호접속조건이 ACCC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ACCC가 직권으로 조정한다. 이 경우 ACCC는 TSRIC(total service long-run incremental cost) 방식으로 접속료를 산정한다.

한편 이러한 상호접속절차의 일환으로서 Telstra 등 접속제공사업자는 ACCC에 사업자간 합의 실패시 적용할 상호접속조건을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ACCC는 승인 기준 마련에 참고하고자 영국의 Ovum사에 호주의 이동망 착신접속료에 대한 국제비교를 의뢰한바 있다. 이에 따라 Ovum사는 10개국 국제비교 결과를 1998년 6월 19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동망 착신접속료가 비합리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Ovum사의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사업자의 평균 착신접속료는 최번시(peak time) 0.47A\$, 한산시(off peak) 0.29A\$, 주말 0.26A\$로 나타났다. 둘째, Telstra 등 상당수 사업자가 아날로그(AMPS)망과 디지털(GSM)망을 동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원가구조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속료는 아날로그망과 디지털망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셋째, Telstra의 이동망 착신접속료가 원가기준요금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 Ovum사는 원가기준으로 이동망 착신접속료를 산정할 경우 고정망 착신접속료의 약8배가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① 수익배분방식에 의한 접속료의 경우 이동망 착신접속료가 고정망 착신접속료 대비 약 6배에 달하고 있음(수익배분방식에 의한 접속료가 원가를 반영하여 설정되었다고 추정).
- ② Ovum사의 자체 원가모형으로 산정할 경우 이동망 착신접속료는 고정망 착신접속료의 약 10배에 달함.
- ③ 영국 OFTEL이 Vodafone과 Cellnet의 원가를 전부배부방식으로 추정한바 있는데 그 경우 착신접속료는 Vodafone이 10~14펜스, Cellnet이 14~18펜스로 추정되었음. 반면에 BT의 시내 싱글 탄뎀착신접속료는 0.931펜스로 이동망 대비 13:1로 산정됨.

Ovum사는 이상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Telstra의 고정망 착신접속료가 분당 0.0202A\$임으로 만약 이동망 착신접속료가 원가기준이라면 그 8배 수준인 분당 0.16A\$가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현행 Telsta가 부과하고 있는 이동망 착신접속료 0.25A\$는 원가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 3> 주요국의 이동망 착신 접속료 현황(단위 : A\$/분)

국가명	이동망사업자	착신접속료			
		peak	off peak	weekend	one charge
호주	Telstra				0.25
프랑스	Itineris	0.45	0.22		
	SFR	0.45	0.22		
	Bouyges	0.29	0.14		
독일	T Mobile	0.65	0.26		
	Mannesman	0.65	0.26		
	E-Plus	0.67	0.27		
이탈리아 ¹	모든 사업자	0.42	0.21		
일본	Typical Plan	0.52	0.25		
뉴질랜드	Bell South	0.45	0.34		
포르투갈	TMN	0.56	0.64	0.54	
	Telecel	0.65	0.64	0.57	
스페인	모든 사업자	0.42	0.21		
스웨덴	모든 사업자	0.36	0.21		
영국	Vodafone	0.37	0.26	0.11	
	Cellnet	0.37	0.26	0.11	
	Orange	0.33	0.23	0.10	
	One2One	0.34	0.24	0.10	
평균		0.47	0.29	0.25	0.25

다. EU

EU는 1997년 6월에 Interconnection Directive를 채택하여 현저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SMP: Significant Market Power)에 대해서 비차별적 상호접속의무, 비용지향 접속료 책정의무를 부과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표 4>과 같다. EU는 원가계산방식으로 장기중분방식을 권고하고 있으며 원가계산방식의 공표 및 NRA(국가규제기관)의 승인, 독립적인 감사 및 규제기관에의 보고를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원가계산제도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최선 관행(best practice)요금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3. 국내 이동망접속료 제도

현행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1997-116호)은 전기통신설비간 상호 접속이 이루어질 경우 접속료는 원칙적으로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하고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7조 1항). 접속료의 구체적 산정방법으로는 접속통화량에 접속통화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접속통화요율은 접속에 제공된 설비별로 접속원가를 총통화량(통신망내통화량과 접속통화량의 합)으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2조 1항 및 2항). 또한 접속원가의 범위는 접속영업비용에 투자보수를 더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제31조). 이처럼 1997

년 개정 상호접속기준에서 접속료산정 및 정산원칙으로 원가계산방식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이동전화망의 접속통화료율 산정의 특례)의 특례조항을 두어 시내전화망에서 이동전화망으로 착신되는 경우 이동전화망 접속통화료율은 고시 시행후 2년간 수익배분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 수익배분방식은 이동전화망으로 착신된 통화요금의 일정비율로 하되 셀룰러망의 경우 '98년도에는 70%, '99년에는 65%로, PCS의 경우는 '98년도에는 75%, '99년에는 70%로 명시되어 있다. 1997년 상호접속기준에서 원가계산방식을 접속료산정의 원칙으로 하면서 이동망 착신접속료에 대해서만 특례규정을 두어 원가계산방식 적용을 유예한 것은 접속료 수입축소를 우려한 이동전화사업자의 반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2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00년부터는 이동망 착신접속료에도 원가계산방식이 도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1999년도 중에 원가계산일정, 절차, 방법 및 이동망 원가범위가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이동전화망 원가검증이 시기상조임을 들어 이동망에 대해서는 원가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점진적 적용을 주장하고 있어서 2000년도 원가계산방식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표 4> SMP 보유 사업자의 의무 및 대상사업자 현황

	고정망 SMP 보유 사업자	이동망 SMP 보유 사업자
의 무	- 비차별적 상호접속 - 원가에 근거한 접속료 - 서비스제공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접속(합의방식) 제공	- 비차별적 상호접속 - 원가에 근거한 접속료 - 서비스제공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접속(합의방식) 제공
공시된 SMP 사업자(1999)	Telekom Austria Belgacom(Belgium) Teledenmark Sonera, Finnet Local Group(Finland) France Telecom Deutsche Telecom OTE(Greece) Telecom Eireann(Ireland) Telecom Italia EPT(Luxemburg) KPN Teleom(Netherlands) Telefonica(Spain) Telia(Sweden) BT, Kingston Com.(UK)	Mobilkom Austria Teledenmark, Sonofon Sonera, Radiolinja, Alanda Mobile FT Mobiles, SFR Panafon, STET Hellas Eircell TIM EPT Telia Vodafone, Cellnet

4. 원가기준 접속료 제도 도입의 필요성

주요 선진국의 규제당국과 전문가들은 도입시기에는 차이가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동망에도 원가기준 접속료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이동망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가기준 접속료제도 도입시기를 늦추어왔을 뿐이다. 이동망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접속료를 원가계산방식으로 하는 것은 원가의 안정성 및 표준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동전화망의 경우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원가의 안정성 유지 및 원가수준 예측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둘째, 이동사업자는 고정통신서비스에 비해 프리미엄(premium)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고위험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높은 요금부과를 통해서 고수익을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점이다. 셋째, 이동통신시장에는 지배적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착신요금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가계산유예논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변화로 인해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첫째, 최근 몇 년 동안 이동전화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이동전화가 고정망과 대등한 경쟁관계 내지는 오히려 고정망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성장하였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와 같은 일부 선진국의 경우 이동망보급율이 인구대비 60%를 상회하고 있고, 국내의 경우도 이동전화보급율이 40%(1998년 4월말 현재 1,730만가입자) 달하고 있어서 조만간 고정망 가입자수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⁶⁾. 이와 같이 이동전화보급율이 증가하면서 각국에서는 더 이상 이동전화사업이 고위험에 노출된 사업으로 간주하기 곤란하며, 고정망에 필적하는 사업기반을 갖춘 사업으로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이동전화망 착신서비스의 경우 경쟁의 원리가 작용하지 않는 부문으로 과도한 접속료를 통해서 지나친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은 소득이 높은 가입자 중심으로 이동전화서비스가 제공되는 단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동전화보편화되면서 이용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영국 OFTEL은 1996/97 회계연도에 Vodafone의 자본 이익률 65.8%, Cellent의 자본이익률 31.5%에 달하는 점을 들고 이처럼 과도한 자본 이익률은 이용자요금과 접속료를 과도하게 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셋째, 사업자간 규제의 비대칭성과 형평성 문제이다. 이동전화사업이 도입초기단계에 있고 가입수도 미미하였을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동전화사업자가 고정망에 필적하는 사

6) 1999년 4월말 기준으로 볼 때 국내 유무선통신서비스 전체가입자는 4,582만명이며 이중 유선가입자가 2,063만명으로 4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이동전화가입자가 1,730만명으로 38%, 무선호출가입자가 744만명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동전화를 포함한 무선서비스가입자가 유선서비스 가입자를 크게 추월하고 있다. 매출액 측면에서 보면 1998년 말 현재 유선통신서비스 매출액이 7조 2백 3십억, 무선통신서비스 매출액이 6조 1천 6십억(전파진흥협회자료)으로 현재의 성장추세라면 조만간 유선서비스 매출액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자로 성장한 만큼 원가검증을 통해 원가기준 접속료를 받고 있는 고정망사업자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동망 착신접속료에 대해서도 원가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동망사업자들은 원가기준 접속료제도 도입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 주요 원인은 무엇보다도 원가기준 접속료제도를 도입 하였을 경우 사업자의 비용구조가 노출되고 착신접속료수입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요금인하 압력이 제기 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Ovum사의 분석⁷⁾에 의하면 원가기준접속료제도 도입시 이동망사업자의 이익률이 14%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가기준 접속료제도 도입시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동전화시장 확대 효과로 인해 단기적 손실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Ovum사는 현재와 같은 요금인하 추세가 계속될 경우 수익배분방식하에서는 접속료가 원가이하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가기준 접속료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동사업자의 장기적인 수익성 유지에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동망접속료에 원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원가기준 접속료도입에 따라 이동전화요금인하가 인하면 이동전화시장 확대 및 이동통신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동통신이용 증가는 관련산업 육성은 물론 경제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5. 맺음말

통신산업에 있어서 상호접속제도는 경쟁의 진전정도에 따라 무정산(Bill & Keep), 수익배분, 원가계산방식으로 이행하게 된다. 이동전화망의 경우 그 동안 경쟁도입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정산 또는 수익배분방식을 채택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동전화보급율이 급증하고 고정망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자 이동전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동전화사업자 보호 육성정책에서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원가계산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7년 상호접속기준 개정시 2000년부터 이동망 원가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예정대로 2000년부터 이동망 원가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상호접속기준 부칙 제3조(이동전화망의 접속통화료율 산정의 특례)는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1999년도 중에 원가계산일정, 절차, 방법 및 이동망원가범위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동망에 원가기준 접속료를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검토중에 있는 국가

7) Ovum, Mobile Interconnection, August 14, 1997.

에서 대부분의 이동전화사업자들은 비용구조의 노출과 접속료 인하 및 요금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여 원가기준접속료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전화보급율이 40%⁸⁾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동망요금도 원가지향으로 시급히 전환될 필요가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보통신사업의 중요한 특징인 상호주의원칙(reciprocity)에서도 이동망의 원가검증은 당연한 일이다. 즉 정보통신산업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a network of network)로 특징 지워지고 따라서 상호접속이슈는 단지 신규사업자가 기존사업자의 유일한 설비에 접속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경쟁망을 접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과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정망과 이동망간 상호접속시 고정망은 원가검증을 통해 접속료를 지불하는 반면에 이동전화망은 수익배분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상호주의원칙으로 볼 때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경쟁이 동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주의 원칙은 효율성 극대화라는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경쟁촉진과 이용자를 이롭게 한다는 정책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권수천, 김태성, 김현중, 통신망간 상호접속의 이론과 실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7.11.
2. 김방룡, 권오성, EU 통신시장의 규제완화 동향 및 전망연구, 기술혁신학회지 제1권 제3호, pp. 419-435, 1998.12.
3. Ovum, Mobile Interconnection, August 14, 1997.
4. Ovum, An assessment of Telstra's access undertakings, June 1998.
5. Ovum, Interconnect ; a global guide to effective telecommunications, 1997
6. OFTEL, OFTEL's submission to the Monopolies and Mergers Commission inquiry into the prices of calls to mobile phones, May 1998.
7. MMC, Report on references under section 13 of the Telecommunications Act 1984 on the charges made by Cellnet and Vodafone for terminating calls from fixed-line networks, December 1998
8. LRIC&Cost Allocation for Interconnect Pricing(conference proceedings), April 19-20, 1999.

8) Ovum은 이동전화보급율이 15-20% 수준에 달한 국가들은 원가기준접속료제도 도입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